

철도안전관리체계 승인검사 개선을 위한 제도적 고찰

송영득*, 장윤석*[†], 엄득종**, 이선욱*, 박소연*, 김보영*

초 록 국내 모든 철도운영자등은 철도안전법 제7조에 따라 국토부장관에게 철도안전관리체계 승인을 받고 이를 지속적으로 유지해야 하는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. 또한 승인받은 안전관리체계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승인 절차를 준수하여 변경해야 한다. 본 연구에서는 최근 5년간 승인검사 결과를 분석하여 검사강화방안 및 개선방안을 도출하였다. 철도안전관리체계가 정착단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정항목에 대한 보완사항 및 제도적 개선사항이 나타나고 앞으로 국내 철도운영자등의 증가 및 승인검사 발생 건수는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며 검사 강화 방안을 체계적으로 마련하여 안전관리, 열차운행, 유지관리의 안전운영 및 초기 사고 장애를 예방할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.

† 교신저자: 한국교통안전공단 철도안전실 철도승인처(cys0615@kotsa.or.kr)

* 한국교통안전공단 철도안전실 철도승인처

** 한국교통안전공단 철도안전실